

예 산 총 칙

200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100,323	12,063,010
일반회계	362,087,069	10,862,612
일반회계	362,087,069	10,862,612
기타특별회계	20,699,342	620,980
주택사업특별회계	216,545	6,49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09,040	12,27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93,958	47,819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919,375	27,581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358,860	40,7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635,000	19,05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8,909,450	267,28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419,188	72,57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03,500	66,10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75,455	32,264
기반시설특별회계	958,971	28,769
공기업특별회계	19,313,912	579,41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772,269	383,1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41,643	196,249

제 2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2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200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30,351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자산및물품취득비